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성 북 구
(아동청소년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5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6년 2월
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25년 제12기 성북구 어린이·청소년 의회 제안 안건 채택
- 나. 관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시 축하 및 청소년 맞춤형 정보 전달을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기존의 제6조제6호의 성년의 달을 삭제하고 축하카드 발송 등 지원을 구체화하여 “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이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시 1만원의 범위 내 청소년 축하카드·기념품 등 지급”으로 신설함(안 제6조제7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
- 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
 - 1) 입법예고
 - 예고기간 : 2025. 12. 26. ~ 2026. 1. 15. (20일)
 -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 - 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3) 비용추계 등 자료 : 비용추계서 미첨부

4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 결과

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5) 법제심사 결과 : 이견없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

7.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이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시 1만원의 범위 내 청소년 축하카드·기념품 등 지급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지원사업) 구청장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<u>청소년의 달, 성년의 달 행사 및 축하카드 발송 등 지원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7. (생략)</p>	<p>제6조(지원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</u></p> <p>7. <u>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이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시 1만원의 범위 내 청소년 축하카드·기념품 등 지급</u></p> <p>8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성북구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카드 제작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』 제11조제2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카드 및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에 해당함
 - 총사업비 : 15,000천원
 - 축하카드 제작비용 : 13,000천원 (4,000X3,200여명)
 - 리플렛, 포스터, 현수막 등 홍보비 : 2,000천원

4. 작성자

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장 이 병 철